

LIG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보통약관

- 목 차 -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구성

제1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구성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3조 보상하는 손해

제4조 피보험자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6조 피보험자 개별적용

제7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차량손해

제8조 보상하는 손해

제9조 피보험자

제10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1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12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제13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제14조 제출 서류

제15조 가지급금의 지급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16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제17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제18조 제출 서류

제19조 가지급금의 지급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20조 보험금의 분담

제21조 보험회사의 대위

제22조 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23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24조 공탁금의 대출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 보험계약의 성립

제26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7조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제28조 보험기간

제29조 사고발생지역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3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31조 계약 후 알릴 의무

제32조 사고발생 시 의무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33조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제34조 보험계약의 취소

제35조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제36조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제37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38조 보험료의 환급 등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39조 약관의 해석

제40조 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제41조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제42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제43조 보험사기행위 금지

제44조 분쟁의 조정

제45조 관할법원

제46조 준용규정

LIG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 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구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 나. 부속품: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 (4) 부속기계장치
 - 다. 부속기계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6.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 운전금지)·제45조(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8.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 또는 이들의 피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

9.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0.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1)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2)

(*1)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제2조(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의 3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이들 3가지 보장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보상
나.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제2편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피보험자 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는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선박에 탑재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9.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무면허운전자가 절취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피보험자동차를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동업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3.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4.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멸실, 파손, 오손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동업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나.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다.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라. 피보험자의 고용주
 2. 피보험자동차에 신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3.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4.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④ 제6조 제1항의 피보험자 개별적용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 제6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10호를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boxed{\begin{array}{c} \text{지급} \\ \text{보험금} \end{array}} = \boxed{\text{'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boxed{\text{비용}} - \boxed{\text{공제액}}$$

②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③ 제1항의 「대물배상」의 경우 '공제액'은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차량손해

제8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9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선박에 탑재하여 운송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로 인한 손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 14.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 15.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 16. 자동차의 제작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제11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boxed{\begin{array}{c} \text{지급} \\ \text{보험금} \end{array}} = \boxed{\begin{array}{c} \text{피보험자동차에} \\ \text{생긴 손해액} \end{array}} + \boxed{\begin{array}{c} \text{비} \\ \text{용} \end{array}} - \boxed{\begin{array}{c} \text{보험증권에 기재된} \\ \text{자기부담금} \end{array}}$$

①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4.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 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③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¹⁾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서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⑤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 ⑥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12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대인배상」,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2.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제13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에금이용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14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1. 보험금 청구서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5. 도난 및 전손사고 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			○
6.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제15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에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대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16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

니다.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에금이용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 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에금이용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18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대물배상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 손해배상청구서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 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 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 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	○

- 제19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에금이용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18조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20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2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24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28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

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26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나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 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에서는 확인서를 제공하여 청약서 부분을 드리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지 않은 경우

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에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27조(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입니다.

제29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30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은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특별약관 기재사항
2. 이 보험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사항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자동차의 탁송대수, 판매 또는 전시실적, 회사 규모, 중

사원의 수 등에 의하여 보험료가 정하여지는 계약의 경우 이와 관련한 자료를 포함)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하거나,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1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3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특별약관 기재사항이 변동된 사실
2.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자동차의 탁송대수, 판매 또는 전시실적, 회사 규모, 종사원의 수 등에 의하여 보험료가 정하여지는 계약의 경우 이와 관련한 자료를 포함)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사고발생 시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책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33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34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5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36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37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

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31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제3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31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등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4.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에 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38조(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26조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 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보험회사가 제34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 제39조(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40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 보험회사는 제32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 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41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42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3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4조(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5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46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별표 1> 대인배상 지급 기준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장례비	지급액: 3,000,000원												
2. 위자료	<p>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p> <p>(1)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p> <p>(2)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p> <p>나. 지급기준</p> <p>(1)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p> <p>(2) 청구권자별 지급기준</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청구권자 신분</th> <th>배우자</th> <th>부 모</th> <th>자 녀</th> <th>형제자매</th> <th>시부모· 장인장모</th> </tr> </thead> <tbody> <tr> <td>1인당</td> <td>500</td> <td>300</td> <td>200</td> <td>100</td> <td>100</td> </tr> </tbody> </table> <p>(3)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 (2)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p>	청구권자 신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청구권자 신분	배우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1인당	500	300	200	100	100								
3. 상실수익액	<p>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산식〉</p> <p>(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p> </div> <p>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p> <p>(1) 유직자</p>												

(가) 산정대상기간

-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 풀이>

-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

-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 풀이>

-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공표한 노임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 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보통인부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20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20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5)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일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56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6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56세부터 59세 미만	48월
59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3) 정년이 60세 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0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5) 취업시기는 20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잔여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6)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나)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frac{1}{1+i} + \frac{1}{(1+i)^2} + \dots + \frac{1}{(1+i)^n}$$

$i=5/12\%$, n =취업가능월수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적극손해	<p>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p> <p>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p> <p>(1) 입원료</p> <p>(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 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 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p> <p>(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p> <p>(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p> <p>(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p> <p>(3) 치아보철비: 금구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p>
2. 위자료	<p>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p> <p>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만 원)</p>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산식〉

$$1\text{일 수입감소액} \times \text{휴업일수} \times \frac{80}{100}$$

나. 휴업일수의 인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그 밖의 손해배상금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위자료	<p>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p> <p>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p> <p>(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p> <p style="padding-left: 20px;">(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나이가 20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70%</p> <p>(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만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노동능력상실률</th> <th>인정액</th> </tr> </thead> <tbody> <tr><td>45% 이상 50% 미만</td><td>400</td></tr> <tr><td>35% 이상 45% 미만</td><td>240</td></tr> <tr><td>27% 이상 35% 미만</td><td>200</td></tr> <tr><td>20% 이상 27% 미만</td><td>160</td></tr> <tr><td>14% 이상 20% 미만</td><td>120</td></tr> <tr><td>9% 이상 14% 미만</td><td>100</td></tr> <tr><td>5% 이상 9% 미만</td><td>80</td></tr> <tr><td>0 초과 5% 미만</td><td>50</td></tr> </tbody> </table> <p>다.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p>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35% 이상 45% 미만	240	27% 이상 35% 미만	200	20% 이상 27% 미만	160	14% 이상 20% 미만	120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35% 이상 45% 미만	240																		
27% 이상 35% 미만	200																		
20% 이상 27% 미만	160																		
14% 이상 20% 미만	120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2. 상실수익액	<p>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차야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p> <p style="text-align: center;">〈산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p>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p> </div>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니츠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3. 가정간호비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p>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p> <p>(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p> <p>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p> <p>(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p> <p>(나) 자력으로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p> <p>(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p> <p>(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p> <p>(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p> <p>(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p> <p>(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p> <p>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p> <p>(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p> <p>(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p> <p>(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p> <p>나. 지급 기준</p> <p>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p>
--	--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지급 기준
1. 수리비용	<p>가. 수리비</p> <p>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p> <p>나. 열처리 도장료</p>

	<p>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p> <p>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p>
2. 교환가액	<p>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응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p>
3. 대 차 료	<p>가. 대상</p> <p>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나. 인정기준액</p> <p>(1) 대차를 하는 경우</p> <p>(가)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서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은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할 수 있음.</p> <p>(나) 대여자동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p> <p>(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p> <p>(가)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p> <p>(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p> <p>다. 인정기간</p> <p>(1) 수리가 가능한 경우</p> <p>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p> <p>(2)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p>
4. 휴 차 료	<p>가. 지급대상</p> <p>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p>

	<p>나. 인정기준액</p> <p>(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p> <p>(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p> <p>다. 인정기간</p> <p>(1) 수리가 가능한 경우</p> <p>(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p> <p>(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p> <p>(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p> <p>5. 영업손실</p> <p>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p> <p>나. 인정기준액</p> <p>(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p> <p>(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p> <p>다. 인정기간</p> <p>(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p> <p>(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p>
<p>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p>	<p>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p>

<별표 3> 과실상계 등

항목	지급 기준
1. 과실상계	<p>가. 과실상계의 방법</p> <p>(1) 이 기준의 「대인배상」,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p> <p>(2) 「대인배상」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을 보상함.</p> <p>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p> <p>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p>
2. 손익상계	<p>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p>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p>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에 따라 감액함.</p>
4. 기왕증	<p>이 약관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대인배상」에 대한 보험금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은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은 보상함.</p>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1)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중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중	50% 40% 30%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중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중	30% 20%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중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중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1) 다만,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주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 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500만원	8급	180만원
2급	800만원	9급	140만원
3급	750만원	10급	120만원
4급	700만원	11급	100만원
5급	500만원	12급	60만원
6급	400만원	13급	40만원
7급	250만원	14급	2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에 의함

LIG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특별약관

- 목 차 -

- 1) 정비수탁자동차 특별약관
 - ①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 2) 검사용역대행업자 추가특별약관
 - ①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 3) 자동차판매상 손해보증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 4) 자동차정비업자 특별약관
 - ① 자기신체사고 추가특별약관
 - ②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 5) 임시운행기간 위험담보 특별약관
 - ①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 ② 임시운행차량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 6)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 ① 대인배상 I 보장 추가특별약관
 - ② 자기신체사고 추가특별약관
 - ③ 차량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
 - ④ Slim 패키지 특별약관
 - ⑤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 ⑥ 대인사고 위로금지원 추가특별약관
 - ⑦ 신법률비용지원 추가특별약관
 - ⑧ 신법률비용지원 벌금제외 추가 특별약관
- 7) 탁송중 위험담보 추가특별약관
- 8) 이륜차배달업자 추가특별약관
 - ①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 9) 판매용자동차 II 특별약관
 - ①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 ② 판매용자동차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1) 정비수탁자동차 특별약관

제1조(회사의 보상책임)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LIG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3조 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수리, 정비, 점검 또는 검사(이하 '정비작업'이라 합니다)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정비작업의 과정(피보험자동차를 수탁 또는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만으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의 손해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피보험자)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4조 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 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기명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또는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③ 위 '①' 및 '②' 이외에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제3조(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정비작업을 위하여 수탁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차는 제외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① 통상의 정비작업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보험계약의 해지)

- ①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② 위 '①'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막 날의 오후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다른 시각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로부터 30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 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1조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 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보험계약의 부활)

- ① 이 특별약관 '제3조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 ②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검사용역대행업자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LIG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3조 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점검 또는 검사(이하 '검사업무'라 합니다)를 위하여 피보험자자동차를 수탁받은 때로부터 통상의 검사업무의 과정(피보험자자동차의 수탁 또는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한 때까지의 피보험자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의 손해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피보험자)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4조 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다음의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제3조(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가 검사업무를 위하여 수탁받아 관리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차 및 건설기계는 제외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통상의 검사 업무 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피보험자의 변동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제2조 피보험자 제②항'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③ 피보험자자동차에 생긴 손해

제5조(보험계약의 해지)

- ①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② 위 '①'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험기간)

회사의 보상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로부터 30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 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1조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 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보험계약의 부활)

- ① 이 특별약관 '제3조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 ②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자동차판매상 손해보증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LIG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 제1절 자기차량손해 제8조 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피보험자동차가 타인에 의해 파손, 오손 혹은 낙서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 ② 책임기간
 1. 회사의 보상책임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회사에 통지한 날의 24시부터 시작하여 4년이 되는 마지막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가 신조자동차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인수한 때로부터 시작하여 4년이 되는 마지막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타인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자녀 이외의 제 3자를 말합니다.

제2조(피보험자)

- ① 보통약관 '제2장 제1절 자기차량손해 제8조 보상하는 손해'의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1. 피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 제작회사, 자동차 판매업자

제3조(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가 판매하여 매수인에게 인도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2장 제1절 자기차량손해 제10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손해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정차 또는 운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가 정차 또는 운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의 추락, 전복, 떨어지는 물체, 날아온 물체, 화재, 폭발,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손해
 3. 타이어에 발생한 손해 다만, 다른 부분에도 동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차량개조에 의해 부착된 장비나 부품의 손해
 5. 피보험자동차의 도난 또는 부분품의 도난사고에 의한 손해 다만, 도난사고라도 도난행위(미수를 포함합니다)에 의해 피보험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제5조(보상한도)

- 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에 발생한 손해액에서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차량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 등

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피보험자동차에 발생한 손해액은 사고당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기간 초일부터 매 1년간 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1년 내에 2회 이상의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건의 사고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합니다.(사고일이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서류에 기재한 피해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기간의 말일을 사고일로 합니다.

제6조(판매차량현황의 통보)

- ① 보험계약자는 매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판매차량현황을 익월 5일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가 위 '①'의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의 서류 또는 장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위 '①'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 '②'의 협조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가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통보되어 보험료가 정산된 판매차량을 제외하고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정산)

- ①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과거 또는 전월의 차량판매실적에 따라 제시한 예납보험료를 보험계약 체결시 및 매월 10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위 '①'의 월별 예납보험료를 이 특별약관 6. 판매차량현황 통보에 의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정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예납보험료와 정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드리며,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까지는 이미 정산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하여 더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위 '①'의 예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위 '②'의 정산보험료중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차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보험계약자가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당해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험계약의 해지)

- ①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② 위 '①'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9조(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막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자동차정비업자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LIG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장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3조 보상하는 손해' 및 '제2장 제1절 자기차량손해 제8조 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수리, 정비, 점검 또는 검사(이하 '정비작업'이라 합니다)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정비작업의 과정(피보험자동차를 수탁 또는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만으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의 손해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피보험자)

보통약관 '제2장 제1절 자기차량손해 제9조 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를 말하며, '제1장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4조 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 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제3조(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승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1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로 기명피보험자가 정비작업을 위하여 수탁중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배상책임에 있어 보통약관 '제10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손해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통상의 정비작업 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회사는 자기차량손해에 있어 보통약관 '제10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손해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는 보통약관 '제2장 제1절 자기차량손해 제8조 보상하는 손해' 및 '제12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 및 피보험자동차의 도난(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을 포함합니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통상의 정비작업 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자동차부품의 수리, 대체 등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제5조(회사의 협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드립니다.

제6조(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위 ‘①’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 ‘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2.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위 ‘②’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때

제7조(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 ① 보통약관 ‘제1장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3조 보상하는 손해 ‘ 및 ’ 제2장 제1절 자기차량손해 제8조 보상하는 손해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
- ② 이 특별약관 ‘제6조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8조(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회사가 대인사고로 피해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1장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3조 보상하는 손해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에서 대인배상I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I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2.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② 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1장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3조 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1사고당 2,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2.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③ 자기차량손해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2장 제1절 자기차량손해 제8조 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릅니다.

1.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피보험자가 직접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2. 제 ‘1’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매 사고에 대하여 1,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9조(보험계약의 해지)

- ①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② 위 ‘①’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10조(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막 날의 오후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다른 시각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자기신체사고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수리, 정비, 점검 또는 검사(이하 '정비작업'이라 합니다)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정비작업의 과정(피보험자동차를 수탁 또는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만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손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④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⑤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 ⑥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 ⑦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 ⑧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 ⑨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 ⑩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 ⑪ 자동차부품의 수리, 대체 등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 ⑫ 통상의 정비작업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마약 또는 약물 등이란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 ①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하며, 회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책임을 집니다.
 1. 기명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2.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3. 위 '1', '2'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각 호의 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특별약관의 배상책임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 ①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위 '①'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boxed{\text{지급보험금}} = \boxed{\text{실제손해액}} + \boxed{\text{비용}} - \boxed{\text{공제액}}$$

- 1. 실제손해액은 '〈별표 1〉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i)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I(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ii)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4. 다만, '3'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해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②'

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④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①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 2.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 3. 후유장애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때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와 진단서,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위 '②'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③'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⑤ 회사는 위 '③' 또는 '④'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가지급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 해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청구서 등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②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로부터 30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 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1조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 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보험계약의 부활)

- ① 이 특별약관 '제3조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 ②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임시운행기간 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운행허가(이하 '운행허가'라 합니다) 신청이 예정되어 있는 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회사의 보상책임)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LIG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3조 보상하는 손해 제①항'의 손해는 피보험자자동차의 운행허가기간(운행허가

를 받을 당시 정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첫날로부터 다음 중 먼저 발생하는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1. 운행허가기간 만료일 24시 단, 운행허가기간 만료일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허가기간의 첫날부터 10일째 되는 날의 24시
2.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의 유효한 대인배상1이 체결된 때. 단, 피보험자동차가 매수인에게 인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가 매매된 경우 매수인(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단,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 ⑤ 기명피보험자 또는 매수인의 의뢰를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탁송(운반)하는 자
- ⑥ 이상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제4조(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상의 한도와 범위)

- ① 회사가 보상하는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과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2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7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합니다.
 1.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이 약관에서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회사의 보상책임)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위 '①'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② 임시운행차량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통보하는 차량 전체를 포괄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 이 추가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대상차량 현황통보)

- 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는 매월의 초일부터 15일까지의 대상차량 현황을 당월의 20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현황을 익월 5일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가 위 '①'의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정산)

- ①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과거 또는 전월의 대상차량 실적에 따라 제시한 예납보험료를 보험계약 체결시 및 매월 10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 '①' 항의 월별 예납보험료를 이 특별약관 2. 대상차량 현황 통보에 의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정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예납보험료와 정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드리며,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까지는 이미 정산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하여 더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 ‘①’ 항의 예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제 ‘②’ 항의 정산보험료 중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차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보험계약자가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당해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제1조(회사의 보상책임)

- ①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LIG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3조 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만으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통상의 대리운전**이라 함은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대리운전업체)에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대리운전업체는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피용인(보험증권에 또는 운전자명세에 기재된 자)으로 하여금 의뢰받은 차량을 수탁 받아 운전케 한 후, 의뢰인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인도해 주고 그에 상응하는 일정의 금액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의 손해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대인배상 1'이라 하며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③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차량손해 제8조 보상하는 손해’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 차대차 충돌사고로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만으로 합니다.
-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9조 운전자의 변경 및 현황통보 제①항’에 의하여 운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전자에 대하여 회사가 승인한 날의 24시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제2조(피보험자)

- ①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4조 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1.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이하 '대리운전자'라 합니다.)

3. 위 '1' 및 '2'의 피보험자 중 자동차정비, 주차, 급유, 세차, 자동차판매, 자동차탁송 등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기명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가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차량손해 제9조 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라 함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당사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승용자동차, 1.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1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로 기명피보험자가 대리운전을 위하여 수탁하여 관리중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배상책임에 있어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차량손해 제10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손해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통상의 대리운전과정을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또는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회사는 자기차량손해에 있어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차량손해 제10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손해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차량손해 제10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제3편 제1장 제12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 도난(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을 포함합니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통상의 대리운전과정을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5. 다른자동차와 충돌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손해
 6. 다른자동차와 충돌하여 발생한 손해 중 다른자동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9조 운전자의 변경 및 현황통보 제①항'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은 운전자가 대리운전을 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회사의 협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협조하여 드립니다.

제6조(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위 '①'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 '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
 2.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사와 직접 합의, 절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위 '②'에 정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때

제7조(비용)

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 ①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3조 보상하는 손해’ 및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차량손해 제8조 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
- ② 이 특별약관 ‘제6조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8조(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회사가 대인사고로 피해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3조 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에서 대인배상I로 지급되는 금액(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I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I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을 공제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제 ‘2’ 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② 대물배상

회사가 대물사고로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3조 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매 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제 ‘2’ 호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③ 자기차량손해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차량손해 제8조 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릅니다.

1.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피보험자가 직접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2. 위 ‘1’의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매 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9조(운전자의 변경 및 현황 통보)

- ① 보험기간 중 이 특별약관 ‘제2조 피보험자의 제①항의 2’에서 정한 운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회사가 위의 사항을 승인하는 경우에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0조(보험계약의 해지)

- ①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효력 발생일자를 명기한 서면에 의하여 해지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② 위 ‘①’의 해지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7일 이전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11조(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막 날의 오후 24시에 끝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대인배상 I 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회사의 보상책임)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사고차량 보험자(공제를 포함합니다)가 이 추가특별약관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대인배상 I 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사고차량 보험자에게 실제 지급금액을 종결 후에 보전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

이 추가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로 합니다.

- ①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단,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 (지연배상금 포함)
- ② 피보험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동 금액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비용

- ①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 ②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③ 기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손해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①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경우에 발생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② 자기신체사고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수리, 정비, 점검 또는 검사(이하 '정비작업'이라 합니다)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정비작업의 과정(피보험자동차를 수탁 또는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만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④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⑤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 ⑥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 ⑦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 ⑧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 ⑨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 ⑩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 ⑪ 자동차부품의 수리, 대체 등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 ⑫ 통상의 정비작업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마약 또는 약물** 등이란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 ①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하며, 회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책임을 집니다.
 1. 기명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2.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3. 위 '1', '2'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각 호의 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특별약관의 배상책임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 ①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위 '①'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boxed{\text{지급보험금}} = \boxed{\text{실제손해액}} + \boxed{\text{비용}} - \boxed{\text{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별표 1〉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i)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I(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ii)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4. 다만, '3'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해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②'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④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①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2.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3.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와 진단서,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위 '②'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③'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⑤ 회사는 위 '③' 또는 '④'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가지급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 해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청구서 등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③ 차량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회사의 보상책임)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6)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제1조 회사의 보상책임 제③항' 을 다음으로 대체 합니다.

- ①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2절 제2장 제1절 자기차량손해 제8조 보상하는 손해' 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만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6)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②항의 5 와 6' 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④ Slim 패키지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차량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손해확장 추가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형태에 따라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자기부담금을 차등 공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사고형태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차대차충돌사고 : 피보험자동차가 타인자동차(이륜차, 농기계 포함)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단, 타인자동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나. 차량단독사고 : 위 '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고를 말합니다.
 - 다. 위 '가'의 타인자동차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⑤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로부터 30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 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1조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 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보험계약의 부활)

- ① 이 특별약관 '제3조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 ②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⑥ 대인사고 위로금지원 추가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의 대인배상담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 ①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 차주의 보험(공제포함)에서 대인배상 I의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이 추가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차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회사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기준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1]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에서의 부상상해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별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가장 높은 상해등급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합니다.

부상상해급수	지급보험금
사망 ~ 1급	400,000원
2급 ~ 7급	300,000원
8급 ~ 12급	200,000원
13급 ~ 14급	100,000원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 6)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동차 차주의 보험(공제포함)에서 대인배상 I 담보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나 차주의 보험료가 할증 안 되는 보험금만 지급된 경우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 ②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 ③ 피보험자동차의 차주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동차의 차주에게 있으며, 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의 차주에게 지급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⑦ 신법률비용지원 추가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이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 라 합니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진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형사합의지원금

피해자가 사망하여 형사합의를 하여 합의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3,000만원을 한도로 사망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부상형사합의지원금

피보험자자동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 및 중상해사고(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로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어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부상형사합의지원금을 상해등급에 따라 다음의 한도로 지급합니다.

기 준	사망	1급	2~3급	4급	5~6급	7급
보상 한도액	3,0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다만, 부상형사합의금 수령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위 ‘1’ 과 ‘2’ 의 차액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형사합의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3. 방어비용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약식기소 제외)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방어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약식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 45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청구가 취하 또는 각하되는 경우 제외)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한 경우는 포함합니다.

<용어풀이>

1.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 (1)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2)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3)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4. 벌금지원금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대한민국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2,000만원을 한도로 벌금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이 특별약관의 ‘1 내지 2 ‘의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ㄱ)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ㄴ)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 명시)

(ㄷ)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ㄹ)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ㄹ)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전쟁, 변란, 폭동, 그 밖의 소요나 이와 비슷한 사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2.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3. 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생긴 때

4.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싸움, 자살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6.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7.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8.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9.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10.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계약을 맺고 있을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12.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

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5조(대위 규정)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 ‘사망·부상 형사합의지원금금 및 별금지원금’ 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3조 보험금의 분담’의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에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7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⑧ 신법률비용지원 별금제외 추가 특별약관

제1조(가입 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특별약관 「신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 내용)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신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②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4’ 의 ‘별금지원금’ 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법률비용지원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 제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 제 1항 · 제22조 · 제23조 또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 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

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

7) 탁송중 위험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6)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①항’ 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취급업자 또는 차주로부터 피보험자자동차의 탁송을 의뢰받아 피보험자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자동차취급업자 또는 차주가 요청한 장소로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자동차취급업자’ 라 함은 자동차정비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주차장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4조 피보험자’ 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라 함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당사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피보험자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6)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 제2조 피보험자’ 에도 불구하고 위 ‘1’ 및 ‘2’ 의 피보험자 중 탁송을 의뢰받아 수탁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봅니다.
4. 기명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가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명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2)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차량손해 제9조 피보험자’ 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승용자동차, 1.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1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로 기명피보험자가 탑승을 의뢰받아 수탁하여 관리중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8) 이륜차배달업자 추가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리스(대여)한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내용)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내용은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3조 보상하는 손해 및 제2장 제1절 자기차량손해 제8조 보상하는 손해’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배달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로 한정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위 ‘②’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공제액
-------	---	-------	---	-----

1.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I(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 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3. 다만, ‘2’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해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③’에 의하여 계산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운전자(이하 ‘배달운전자’라 합니다)
 3. 기명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가 배달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② 위 ‘①’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4조(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가 배달업무를 위하여 관리중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손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④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⑤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 ⑥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 ⑦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 ⑧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 ⑨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 ⑩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하

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 ⑪ 통상의 배달업무과정을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마약 또는 약물** 등이란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①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2.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3.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와 진단서, 그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위 '②'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③'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⑤ 회사는 위 '③' 또는 '④'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에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가지급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 해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청구서 등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8조(운전자의 변경 및 현황 통보)

- ① 보험기간 중 이 특별약관 '제3조 피보험자의 제①항의 2' 에서 정한 배달운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회사가 위의 사항을 승인하는 경우에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청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보험료분할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로부터 30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 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1조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 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보험계약의 부활)

- ① 이 특별약관 '제3조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 ②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회사의 보상책임)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위 '①'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9) 판매용자동차Ⅱ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당사의 임시운행기간 위험담보 특별약관이나 이에 준하는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회사의 보상책임)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3조 보상하는 손해 제①항’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동차의 등록, 검사, 설비, 운반 등 통상의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 ② 위 ‘①’의 손해중 임시운행기간 위험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 ③ 회사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차량손해 제8조 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동차의 등록, 검사, 설비, 운반 등 통상의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직접손해만으로 합니다.
- ④ 회사의 보상책임은 운행허가기간(운행허가를 받을 당시 정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첫날로부터 다음 중 먼저 발생하는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1. 운행허가기간 만료일 24시 단, 운행허가기간 만료일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허가기간의 첫날부터 10일째 되는 날의 24시
 2.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의 유효한 대인배상1이 체결된 때, 단, 피보험자동차가 매수인에게 인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의 제작회사(당해 피보험자동차의 판매사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자동차 판매업자 및 매수인
- ③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④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차량손해’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가 됩니다.

제4조(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하며,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차량손해 제11조 지급보험금의 계산’에서 정의한 보험가액은 피보험자동차의 출고가격을 50만원을 단위로 하여 50만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편 제2장 제1절 자기차량손해 제10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의 통상의 판매 과정을 현저하게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회사의 보상책임)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위 ‘①’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② 판매용자동차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통보하는 차량 전체를 포괄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 이 추가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대상차량 현황통보)

- 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는 매월의 초일부터 15일까지의 대상차량 현황을 당월의 20일까지, 16일부터말일까지의 현황을 익월 5일까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가 위 '①'의 통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정산)

- ① 보험계약자는 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과거 또는 전월의 대상차량 실적에 따라 제시한 예납보험료를 보험계약 체결시 및 매월 10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 '①' 항의 월별 예납보험료를 이 특별약관 제2조 대상차량 현황 통보에 의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정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예납보험료와 정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드리며,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까지는 이미 정산한 보험료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청구하여 더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 ③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 '①' 항의 예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제 '②' 항의 정산보험료 중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차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보험계약자가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당해 예납보험료 또는 정산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